

대전지방법원 2022. 11. 29 선고 2022가단1054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62,984,6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2,984,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9. 3.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에 3억 5,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,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6,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소외 회사는 여신상환기일(2020. 5. 28.)이 도과하도록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. 2022. 2. 10.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잔액은 원금 45,573,697원, 이자 17,410,971원 합계 62,984,668원이고,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%이다.

다. C은 2018. 6. 29.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2018. 6. 29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9. 3. 채권최고액 272,4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이 사건 증여 이후 2020. 12. 21. 채권최고액 2억 원, 채무자 피고 및 소외 회사,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덕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 전 항변

이 사건 증여 무렵 원고도 C의 증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,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2. 2. 16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- 1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- 2)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을 넘는 기간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해당 여부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여부

- 1)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C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,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원상회복한 것일 뿐이고,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2)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,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.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.

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의 1/2 지분이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. 오히려 피고가 C의 배우자인 점, 이 사건 사해행위는 편무계약인 증여계약인 점 등을 고려할 때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1)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이후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2)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,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적어도 450,000,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72,400,000원(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)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88,800,000원[$(450,000,000\text{원} - 272,400,000\text{원}) \times 1/2$ 지분]이 된다.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(62,984,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2. 11.부터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)이 위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,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,984,6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,984,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민하

별지

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 대덕구

[도로명주소] 대전 대덕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117.388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대전 대덕구 대 130069㎡

1) 원고는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’라고만 기재하였으나,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’의 오기임이 분명하다.